## [별표 27] [신설 2014.11.3.]

## 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시스템 운영 절차

## 1.0 목적

규칙 제12장의 규정에 의거 전력거래소의 수요반응자원 등록, 등록시험, 입찰,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, 전력부하감축(증대)량 평가 및 정산 등 수 요반응자원 운영 및 전력거래를 위한 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시스템(이하 "시스템"이라 한다)의 운영절차를 정함으로써 원활한 수요반응자원 거래 시장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 <개정 2021.1.1>

## 2.0 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시스템 운영

- 2.1 시스템의 설치
- 2.1.1 전력거래소는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하여 수요반응자원의 운영 및 거래와 관련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.
- 2.2 시스템의 기능
- 2.2.1 시스템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을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 - 1. 수요관리사업자, 수요반응자원 및 수요반응참여고객의 등록, 관리
  - 2. 수요반응자원의 입찰
  - 3. 수요반응자원의 등록시험과 감축시험의 시행 및 조치
  - 4. 수요반응자원에 대한 실시간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
  - 5. 전력부하감축(증대)량 평가 및 정산 <개정 2021.1.1>
  - 6.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 관련 정보공개
  - 7. 실시간 사용전력량 데이터 취득을 위한 연계 및 데이터 관리
  - 8. 정산용 사용전력량 데이터 수집 및 관리
- 2.3 시스템의 운영
- 2.3.1 시스템의 가동시간은 1일 24시간 연속 가동을 원칙으로 한다.
- 2.3.2 전력거래소는 시스템의 운영상 중대한 장애 발생 또는 업무상 시스템 중지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시스템 정지계획을 수립하여, 회원에게 통지하고 시스템을 일시정지 시킬 수 있다. 단, 사안이 긴급하여 정지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 없이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다.
- 2.3.3 전력거래소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스템 정보의 보존 및 손상된 데이터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수시 또는 주기적으로 보조기억 매체에 보존 작업을 수행한다.

- 2.3.4 전력거래소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장애 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시스템 및 부대설비의 예방정비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.
- 2.3.5 전력거래소는 실시간 사용전력량 데이터의 취득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미취득시 시스템의 데이터 연계 상태를 점검한 후 통신회사의 통신통제부 서와 판매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, 판매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은 시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.
- 2.4 회원의 준수사항
- 2.4.1 수요관리사업자는 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시스템과의 접속을 위한 제반 요구사항의 준수 등을 위한 전력거래소 직원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2.4.2 통신규약 : OpenADR
- 2.4.3 회원은 전력거래의 비밀 보호를 위해 전력거래소가 회원에게 부여한 접속 계정(또는 인증번호)을 관리하는 사내 접속계정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전력거래소 보안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접속계정관리자 변경의 경우에도 동일하다.
- 2.4.4 회원의 접속계정관리자는 매 1개월 단위로 회원 사내 접속자의 비밀번호 가 변경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2.4.5 수요관리사업자 회원이 전용데이터회선을 이용하여 입찰 및 사용전력량 데이터 연계 시 발생하는 데이터통신요금은 회원이 지불하여야 한다.